

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단체는 ‘칠곡 드림 스포츠 클럽’이라 칭한다.

제2조(소재지) 이 단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둔다.

제3조(목적) 이 단체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 및 공익적 활동을 통해 회원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에 기여하고 인근 지역의 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이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a. 스포츠에 대한 정보의 공유, 홍보
- b. 스포츠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, 강습
- c. 생활인, 유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운영
- d.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4조(회원의 자격)

이 단체의 회원은 회원가입에 제약이 없으며, 부당하게 회원의 연령, 성별, 인종 등을 차별하지 않으며,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
- ① 회원은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은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
제6조(회원의 탈퇴)

- ① 회원은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- ②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

위를 하거나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장 임 원

제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이 단체는 대표 1인, 대표를 포함한 회장 1명, 부회장 2명 이사 2명을 두며, 2명 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

-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a. 이 단체의 회계 및 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- b.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시 시정요구하는 일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제9조(임원의 선출)

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 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2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4장 총 회

제11조(구 성)

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2조(의결사항)

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 선출·해임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
5. 회원의 제명결정 승인
6. 그 밖의 중요한 사항

제13조 (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대표는 이를 소집한다.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- ② 총회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③ 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제14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-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장 이사회 (운영위원회)

제15조 (구성)

이사회는 대표와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6조 (소집)

- ①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③ 대표는 회장단 및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칠곡 드림 스포츠 클럽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사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칠곡 드림 스포츠 클럽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장 재정

제18조 (회계연도, 수입 및 지출)

- ①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- ②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- ③ 이 단체의 지출은 이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부합하거나 회칙으로 정한 범위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로 한다.

제19조 (회비)

- ① 회비는 입회비 2만원과 월 회비 1만원으로 한다.
- ② 회비 납부기한은 15일로 한다.

제7장 보칙

제20조(예산편성 및 결산)

- ① 이 단체는 회계연도 2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이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1조(회계 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2조(회계의 공개)

이 단체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
제23조(임원의 보수)
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 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(해산)

이 단체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.

제25조(잔여재산 처분)

이 단체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한다.

제26조(정관 변경)

정관변경은 총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7조(수익분배의 금지)

이 단체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이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임사항)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할 수 있다.